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8-7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
2018-72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18-73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2018-7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5
2018-75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33
2018-7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39
2018-7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1
2018-78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5
2018-7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5
2018-80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85
2018-81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8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8~71

제출일자 : 2018.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은 어린이집, 장난감은행 등의 공공 시설운영으로 일일 상시 이용객이 200명 이상 되고, 회의실 대여에 따른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회의시에는 일일 500명 이상 사용하는 등 이용객수에 비해 주차공간(24면)이 턱없이 부족함
-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사업위치 : 거창읍 중앙리 333-1번지 일원
- 면 적 : 1,008㎡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40면 이상)

나. 취득재산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1,008	472,550	
매입	토지	거창읍 중앙리 333-1	대지	995	466,456	송 * 섭
매입	토지	거창읍 중앙리 333-15	대지	13	6,094	송 * 섭
매입	건물	거창읍 중앙리 333-1	-	585.6	184,590	송 * 섭

※ 기준가격 : 토지 - 공시지가(468,800원/㎡) × 면적(㎡) , 건물 - 시가표준액

다. 추진경과

- 2018. 9. : 주차장 확장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2018. 9. : 토지소유자 매도 의사 확인
- 2018. 9. : 공유재산심의회

라. 향후계획

- 2018. 10. : 예산 편성후 부지 매입
- 2019. 5. : 주차장설치사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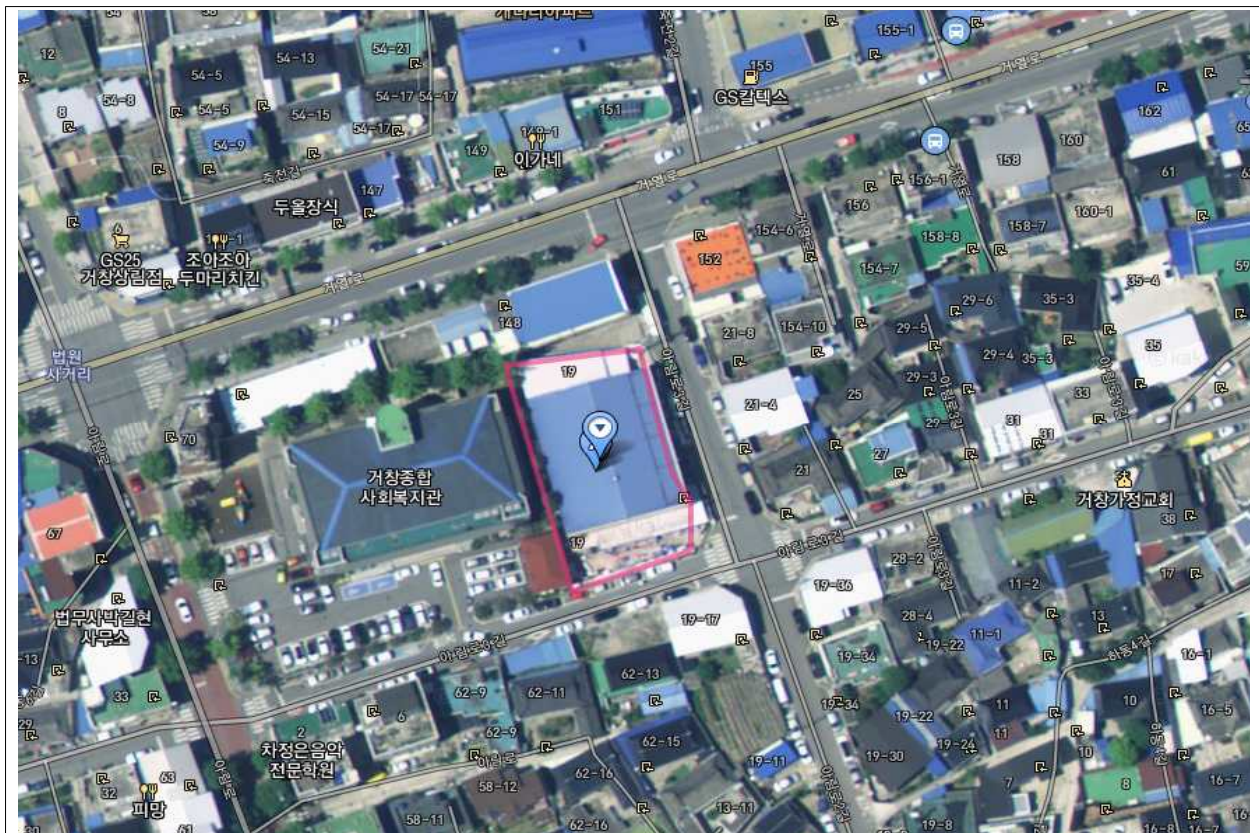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부지 매입 및 주차장 확장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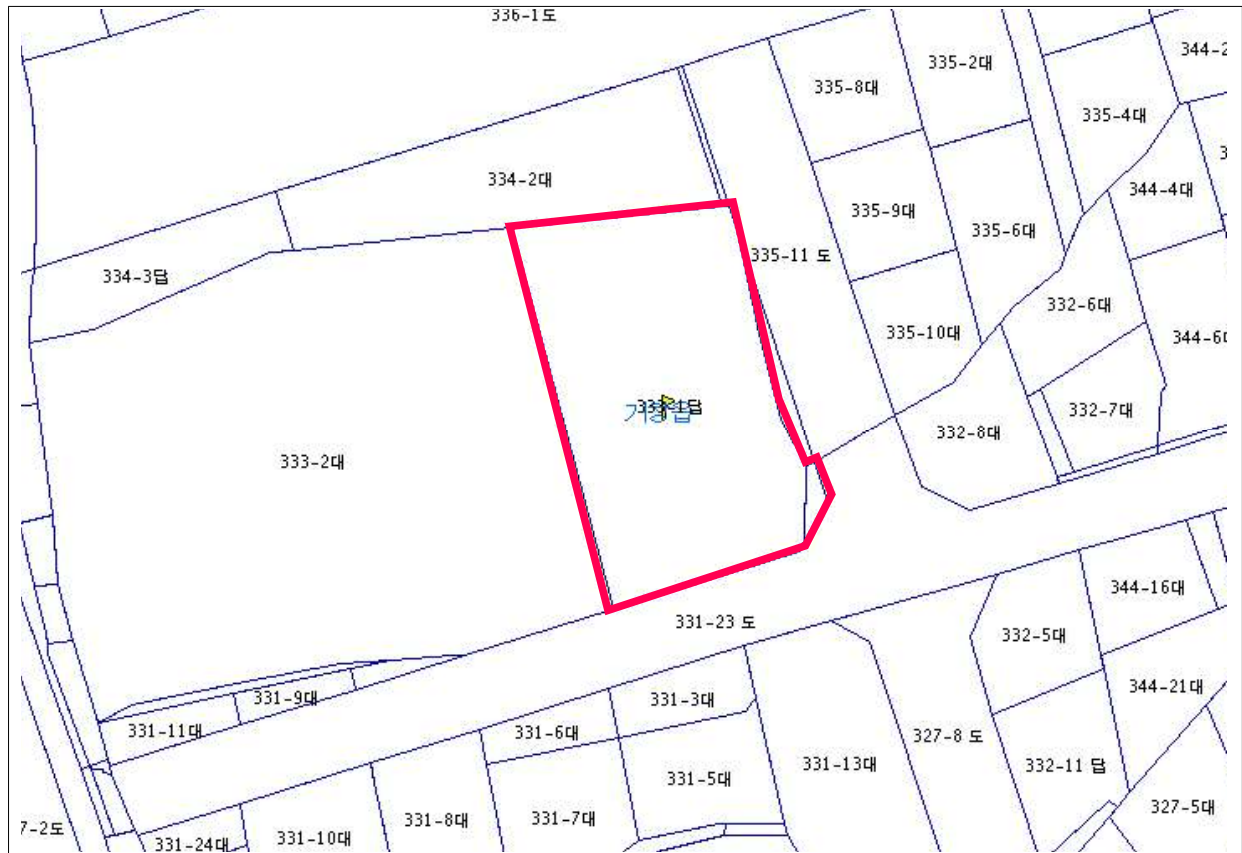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5. 지적도



6. 현장사진



관 계 법 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 ④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 ⑤ 민간위원 중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한다.
-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전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⑨ 심의회에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 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⑪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8~72
----------	---------

제출일자 : 2018. 10.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통합복지시설인 쉼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삶의 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 삶의 쉼터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송정리 941-1)

다. 규 모 : 대지 15,057㎡, 건축면적 2,206.3㎡, 연면적 5,508.99㎡
- 노인·여성복지관 : 3,009.31㎡, 장애인복지관 2,499.68㎡

라. 사업내용 :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마. 위탁대상 사무

○ 시설 : 거창군 삶의 쉼터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운영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위탁기간 : 2019.1.1. ~ 2023.12.31.(5년)

사.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자. 소요예산

○ 시설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 삶의쉼터는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시설로 전문적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및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함
- 지난 2008년 개관이후 10년에 걸쳐 위탁 운영한 결과 시설평가에서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통합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운영)

다. 향후계획

- 2018. 10. 22.(월) ~ 11. 5.(월) : 수탁자 모집 공고
- 2018. 11. 6.(화) ~ 11. 12.(월) : 수탁법인 신청 접수
- 2018. 11. 13.(화) ~ 11. 16.(금)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18. 11. 19.(월) ~ 11. 23.(금) :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 2018. 12월 중순 : 거창군 삶의 쉼터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하순 : 수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라. 예산조치

- 2018년 종사자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계상함

마.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수탁자 선정관련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I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 제4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운영)

II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군 삶의 쉼터(노인·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송정리 941-1)
- 규 모 : 부지 15,057m² 연면적 : 5,508.99m²(지하 1층, 지상 3층)
 - 노인여성복지관 : 3,009,31m², 장애인복지관 : 2,499,68m²
- 직원편제 : 29명(노인·여성복지관 11명, 장애인복지관 18명)

III 시설연혁

- 시설착공 : 2005. 10. 11
- 시설준공 : 2008. 1. 9
- 시설개관 : 2008. 6. 26
- 위·수탁개요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최초 위탁 : 2008. 2. 19 ~ 2011. 2. 18(3년)
 - 1차 재위탁 : 2011. 2. 19 ~ 2014. 2. 18(3년)
 - 2차 재위탁 : 2014. 2. 19 ~ 2018. 12. 31(5년)

IV 수탁자 선정 방침

- 수탁법인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유지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보장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 시 재공고

V 위탁개요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만 경상남도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경상남도 내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위탁기간 : 5년(재계약 가능)
- 위탁업무
 - 삶의 쉼터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관리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신청·접수
 - 수탁법인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 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심의위원 : 9명(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 선정기준 :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평가결과(평가한 경우),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평가항목, 세부항목 별도 작성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협약체결 :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 예산집행 및 자부담 약정
 - 위탁계약 시 법인 전입금 예산액의 1%정도 부담
 - 위탁운영 체결 후 자체운영규정(채용, 회계,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승인

IV 향후 추진일정

- 의회동의 : 2018. 10. 18.(목)까지
- 모집공고 : 2018. 10. 22.(월) ~ 11. 5.(월)
- 접 수 : 2018. 11. 6(화) ~ 11. 12.(월)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18. 11. 13.(화) ~ 11. 16.(금)
 - 구성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
(※ 9명 이내로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구성)
-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 2018. 11. 19.(월) ~ 11. 23.(금)
 - 심의내용 : 공모에 응모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 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배점표에 따라 심사
- 위·수탁협약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중
- 운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 ~ 2018. 12월 말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 (운영)

①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8~73
----------	---------

제출일자 : 2018.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나. 위탁대상 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5~ 10명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월 급여 :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다. 수탁기관 가격기준 :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가 가능한 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사업은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기업 또는 법인에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다. 향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8. 10월 중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18. 10월 ~ 11월 중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위·수탁 협약체결 : 2018. 11월 중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간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0,000천원

마.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계획

-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이 2018. 12. 31.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I 위탁현황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현황

위탁사무	수탁기관	대 표	위 치	업 종	비고
여성결혼이민자 고용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김학두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72	농산물통유	

○ 위탁기간 : 2016. 3. 2. ~ 2018. 12. 31 / 2년 10개월

- 최초위탁 : 2011. 3. 2.
- 2015년 수탁기관 모집공고 : 현 수탁기관만 신청하여 재 위탁

○ 운영방법 : 여성결혼이민자 5~10명을 채용, 근로임금 50%이내를 위탁금으로 보조,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 여성결혼이민자 고용현황

고용분야	고용현황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사과선별 작업	8명	9명	8명	

○ 위 탁 금 : 30,000천원 / 군비

II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고 : 2018. 10. 22. ~ 10. 31. / 10일간
- 수탁기관 신청 접수 : 2018. 11. 1. ~ 11. 5. / 5일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구성 : 인원 6명 이상 9명 이하 / 위원장 1인 포함
 - 심의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1월중
 - 신청 기관이 2개 기관 이하일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검토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간
- 위탁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고용
 - 여성결혼이민자 공개채용, 근로계약 체결, 상시고용

III

행정사항

- 수탁기관 공고 : 2018. 10. 22. ~ 10. 31. / 10일간
- 수탁기관 신청 : 2018. 11. 1. ~ 11. 5. / 5일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1. 15. 예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8. 11. 30.
- 협약서 공증 : 2018. 12. 3.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간

관계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3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군수는 군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서비스 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 등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8~74

제출일자 : 2018.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19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정성훈)
- 사 업 비 : 4,012천원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19년	3,700	4,012	4,012			4,012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나. 부서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1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 붙임 3

관 계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12.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151조 시행령 : 조례 :				전화번호 : 02-2071-279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18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0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파견인력 제외)		36명 (10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 (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4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원 (2018년 5월 현원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 22. ~ 2020.12. 21.	
	부이사장	이○○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권한대행)			2018. 2. 28. ~ 2019. 2. 27.	
	원장	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8. 1. 17. ~ 2021. 1. 16.	
	이사	최○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사	하○○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사	이○○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2018. 2. 28. ~ 2019. 2. 27.	
	이사	이○○	충청북도 행정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사	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사	김○○	강원 강릉시 부시장			2018. 2. 28. ~ 2019. 2. 27.	
	이사	박○○	인천 용진군 부군수			2018. 2. 28. ~ 2019. 2. 27.	
	이사	강○○	광주 북구청 부구청장			2018. 2. 28. ~ 2019. 2. 27.	
	이사	손○○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 2. 28. ~ 2019. 2. 27.	
	감사	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장○○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 2. 28. ~ 2020.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5,809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지 자체가 출자·출연한 금 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23,795 (자산 총액)
	예산액	8,406	9,986	13,313		부채	12,62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8,276	9,551	12,102		자본	11,16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572				8,027		2,545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심의(안) 작성관련 참조자료를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 자료
2.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신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리	경영지원실장	원장	2018. 5. 29.
협조자 팀장			
시행	경영지원실-1312	(2018. 5. 29.)	접수 재무과-13072 (2018. 5. 30.)
우	0678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한국지방세연구원	/ http://www.kilf.re.kr
전화번호	02-2071-2798	팩스번호 02-2071-2722	/ monsy1@kilf.re.kr / 대국민 공개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046호(2018. 8. 01.)와 관련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하오니,
3.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통보,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 출연금 산정서식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하여 '18. 8.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
2. 2019년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전 시군 세무부서장

주무관 세정담당 대결 2018. 8. 2. 세정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세정과-8142 (2018. 8. 2.) 접수 재무과-18822 (2018. 8. 2.)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사립 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6 팩스번호 055-211-3719 / kmj2063@korea.kr / 비공개(5)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안
번호

2018~75

제출일자 : 2018.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665,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19년	665	665	665			665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나.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 12. 16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8.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명		17명	
임 원 (‘18.9.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구○○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前) 민주평통회장			2016.10.31.~2018.10.30.
	이사	이○○	거창군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사	이○○	아림노인요양원장			2017.12.20.~2019.12.19.
	이사	송○○	前) 창호초등학교 교장			2017.12.20.~2019.12.19.
	이사	김○○	덕유농산 대표			2017.12.20.~2019.12.19.
	이사	오○○	前) 거창중학교 교장			2016.10.31.~2018.10.30.
	이사	이○○	학원 운영			2018.01.03.~2018.10.30.
	이사	백○○	거창한뉴스 대표			2018.08.22.~2020.08.21.
	이사	양○○	前)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2017.12.20.~2019.12.19.
	이사	백○○	거창농산 대표			2017.12.20.~2019.12.19.
	이사	송○○	거창군 이장자율협의회장			2018.08.22.~2019.12.19.
	이사	김○○	거창푸드종합센터 이사장			2017.12.20.~2019.12.19.
	이사	이○○	함께하는 거창 대표			2017.12.20.~2019.12.19.
	이사	백○○	前) 교장			2018.01.03.~2020.01.02.
	감사	유○○	푸른산내들 이사			2017.12.20.~2019.12.19.
	감사	표○○	YMCA 이사장			2017.12.20.~2019.12.19.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489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0,665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10,489 (자산 총액)
	예산액	11,830	11,083	11,122		부채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00	665	665		10,48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14			1,117		-103

관 계 법 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8~76
----------	---------

제출일자 : 2018.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요구이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나. 사업량 :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3대

다. 위탁대상 사무

- 교통약자콜택시 위탁 운영(3대)
- 교통약자콜택시 유지관리 및 운송사업 전반

라.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2015.7.1 ~ 2018.12.31 / 당초 2015.7.1 ~ 2018.6.30
- 위탁차량

차 종	차 명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중형승합	창립하이램프 장애인차	74우8737	2012	* 휠체어 슬로프 (경사판) 장착
중형승합	창립하이램프 장애인차	74우8738	2012	
중형승합	창립하이램프 장애인차	74우8739	2012	

○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5년도 : 3,895명(1일 평균 운행횟수 10.6)
- 2016년도 : 3,218명(1일 평균 운행횟수 8.8)
- 2017년도 : 3,209명(1일 평균 운행횟수 8.7)
- 2018년도 상반기 : 1,526명(1일 평균 운행횟수 8.4)

마. 운영계획

○ 모집방법 : 공개모집(1개 업체)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8조

○ 위탁기간 : 위탁업체와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운행시간

- 평일 : 7~21시, 토요일 : 8시~18시, 일요일 : 8시~13시(연중무휴)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 편도 운행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8조, 제21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다. 향후일정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018. 10월초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 개최 : 2018. 10월말
- 위탁업체 선정공고 및 이용요금 고시 : 2018. 11월초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8. 11월말
- 위탁 운영 : 2019. 1. 1. ~ 2021. 12. 31.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130,000천원(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운영 계획

거창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행 중인 교통약자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계획임

□ 위탁운영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8조(운영위탁)

□ 위탁 개요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업체 : 1개 업체 선정 / 위탁차량 : 3대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계약부터 3년간)
- 운행시간(연중무휴)
 - 평일 : 7~21시, 토요일 : 8시~18시, 일요일 : 8시~13시
 - ※ 추후 차량 추가 구입 및 수요 증가 등 필요에 따라 확대 운행 가능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대구)까지 운행

□ 그간의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2015.7.1 ~ 2018.12.31 / 당초 2015.7.1 ~ 2018.6.30
- 기간연장 사유
- 군의회 미 개원(3월~6월)으로 인한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처리 불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자체사무를 위탁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함

- 교통약자콜택시와 휠체어택시 통합안 검토 지연
 - 두 사업의 계약만료(2018. 6. 30)를 앞두고 통합안에 대한 부서의 지속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에 따른 통합여부 최종결정 지연
 - ⇒ 기존방식대로 각각 운영 결정(2018. 5월초) : 복지정책과

□ 운영방법

구분	방 법	세부내용	비 고
운영 방법	위탁운영	· 대상업체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사무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운송사업자 · 위탁방법 : 공개모집	
운영 대수	3대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운영 시기	계약일로부터 3년	· 2019. 1. 1 ~ 2021. 12. 31	
운행 시간	연중무휴	· 연중무휴 · 평일 : 7시~21시 · 토요일 : 8시~18시, 일요일 : 8시~13시 ※ 운영대수 또는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운행 구역	경상남도내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대구)까지 운행	
이용 대상	교통약자	① 1급 또는 2급 장애인 ② 65세 이상의 노약자 ③ 임산부 ④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 ⑤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단, ①~④항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이용 요금	위원회 심의결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결정 · 관내 : 2,000원(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의 2배) · 관외 :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적용 · 유료도로 통행료 : 지자체 지원	
이용 방법	즉시콜 사전예약 병행	· 접수 : 경남도 콜센터(1566-4488) · 예약시기 : 이용 전일 21시~24시까지(3시간 동안)	

□ 위탁업체 지원 및 선정방법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차량 및 운영비

차 종	차 명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중형승합	창립하이래프 장애인차	74우8737	2012	* 휠체어 슬로프 (경사판) 장착
중형승합	창립하이래프 장애인차	74우8738	2012	
중형승합	창립하이래프 장애인차	74우8739	2012	

- 운 영 비 : 130,000천원

▶ 차량 1대당 43,000천원(운전원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등)

※ 단,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사무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운송사업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향후계획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018. 10월말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 개최 : 2018. 11월 중
- 위탁업체 선정공고 및 이용요금 고시 : 2018. 11월말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8. 12월초
- 위탁 운영 : 2019. 1. 1. ~ 2021. 12. 31.

□ 기대효과

- 법인·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약자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관 계 법 령(요약)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교통약자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12호, 2017.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경제교통과)

(제정) 2011.08.08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6.07.20 조례 제2328호

- 제1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2015.12.30.)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거창군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 신청, 예약 신청 및 장기 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자의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④ 삭제 <2012. 11. 30.>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경제교통과)

(제정) 2011.08.08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6.07.20 조례 제232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저상버스”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제2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요금(시외버스는 해당구간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원면 사용종료 건설폐기물매립장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2018-77
----------	---------

제출연월일	2018. 10.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신원면 건설폐기물 매립장 미매립지 일부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감악마을회법인으로 부터 사용 신청이 있어
- 타당성 검토결과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사용종료 됨에 따라 공유재산의행정기능이 소멸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행정재산의 가치를 최대화 하고 매립장 조성당시 감악마을과 협의된 주민지원 사업의 이행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진사항

- 2017.12. :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확보(낙동강수계기금)
- 2018.02. : 매립장 부지 지목변경 및 분할
- 2018.02. : 건설폐기물 매립장 사용종료 승인

나. 추진개요

-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 사업자 : 감악마을회법인 대표 유종수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6월(5개월간)
- 발전용량 : 100kw
- 사업비 : 200,000천원(낙동강수계기금)
- 발전금액 : 24,000천원/년

※ 수익금 사용 : 감악마을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다. 재산의 표시

위 치	면 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신원면 구사리 1625-18번지	4,499㎡	1,500㎡	100kw	감악마을회법인 대표 유종수

라.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제4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제2항

4. 위치도 및 현황사진(신원면 구사리 1625-18번지)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② 법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 할 수 있으며,임대요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8~78
----------	---------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주요내용

가. 현 황

- 시설명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
- 대지면적: 33,819㎡ (토지소유자 : 거창군)
- 연면적 □ 당초 : 8,219㎡(선별 3,499㎡, 저장 1,780㎡(1,440톤) / 기타 2,940㎡)
 └ 보완 : 2,874㎡(저장 1,467㎡, 선별 1,171㎡, 기타 236㎡)
- 시설내역 : 선별기(1일 50톤 / 연간 10,000톤 처리) / '13년도 6,366톤

나. 위탁사무

- 시설 : 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005. 5. 19 : 서북부경남 거점APC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2007. 5. 30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설립
- 2008. 9. 9 ~ 2009. 10. 25 : 서북부경남 거점APC 건립
- 2009.11.17~2014.12.31 : (주)NH유통 1차 위탁 운영
- 2012. 7. 27 : 서북부경남 거점APC 시설보완사업 준공
- 2015.1. 1 ~2018.12.31 : (주)NH유통 2차 위탁 운영

다. 운영계획

○ 위탁자 공모

–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5년)

○ 위탁운영 방법

-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통합운영
- 거창군·함양군·함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
-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

라. 소요예산

○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나. 향후계획

- 운영주체 위탁 공모 군의회 동의 : 2018년 10월
- 운영주체 공모 모집·제안서 평가 운영위원회 선정 : 2018년 11월
- 거점APC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2018년 12월
- 위탁 운영 실시 : 2019. 1. 1 ~ 2023. 12. 31.(5년간)

다.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서북부경남 거점APC 위탁 공모 계획

- (주)NH유통에서 지난 4년('15~'18년)간 위탁 운영한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위탁 기간이 만료('18. 12. 31)됨에 따라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모를 통한 위탁운영하고자 함.

I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 및 제15조 제1항
-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가능

II 시설개요

□ 거점APC 건립 연혁

- 2005. 5. 19 : 서북부경남 거점APC 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2007. 5. 30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설립
- 2009. 4. 1 : 거창사과원예농협이 주관농협 선정/ 지분율51%
- 2009. 9. 25 : 서북부경남 거점APC 준공/ 개장 11. 10.
- 2012. 7. 27 : 서북부경남 거점APC 시설보완공사 준공

□ 시설현황

- 위 치 : 거창·거함대로 3372 / 거창·함양·합천군
- 대지면적 : 33,819m² (토지소유자 : 거창군)
- 사 업 비 □ 당초: 19,303백만원(기금7,750, 도비3,100, 거창7,012, 함양1,240, 합천201)
 └ 보완: 3,279백만원(국 10, 기금 1,560, 도 624, 군 1,085)
- 연 면 적 □ 당초 : 8,219m²(선별 3,499m², 저장 1,780m²(1,440톤) / 기타 2,940m²)
 └ 보완 : 2,874m²(저장 1,467m², 선별 1,171m², 기타 236m²)
- 시설내역 : 선별기 (1일 50톤 / 연간 10,000톤 처리) / '13년도 6,366톤

□ 운영현황

○ 위탁기간

- 1차 2009. 11. 17 ~ 2014. 12. 31 (5년, 1개월간)
- 2차 2015. 1. 1 ~ 2018. 12. 31 (4년간)

○ 운영주체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대표이사 김학두

- 주관농협 :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 조합장 윤수현
- 참여농협 : 14개소 / 거창7, 함양2, 합천5

○ 자본금 : 2,000백만원(거창원협 51%, 기타농협 49%)

Ⅲ 위탁운영 공모 추진 계획

□ 위탁운영 선정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7.9.15.)

-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주체 선정 결정

○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간)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15명 (위원장1, 부위원장 1, 위원 13)

- 위원장 : 거창군 부군수
- 위 원 : 13명 이내

(공무원6, 군의원1, 생산농가2, 함양·합천군3, 전문가1)

□ 위탁자격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4. 제1호의 생산자단체,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관련

□ 위탁범위

- 시설 : 산지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 공고방법

- 장 소 : 거창군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8. 10.15~ 31일(15일간)

□ 제안서 제출

- 접 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 위탁신청서 1부.
 - ② 정관 1부.
 -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④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 ⑤ 시설물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1부.
 - ⑥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 포함) 1부.
 - ⑦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IV 향후계획

- 운영주체 위탁 공모 군의회 동의 : 2018년 10월
- 운영주체 공모 모집·제안서 평가 운영위원회 선정 : 2018년 11월
- 거점APC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2018년 12월
- 위탁 운영 실시 : 2019. 1. 1 ~ 2023. 12. 31.(5년간)

V 기대효과

- 유통센터의 물류·유통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개모집으로 통한 투명성 있는 운영자를 모집 거창군의 유통의 체계구축으로 산자유통의 활성화 기대

관 계 법 령(요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87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8577호, 2018. 1.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과
연락처: 055-940-317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2. 농산물의 세척·절단·살균·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4. 제1호의 생산자단체,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7조(운영주체 선정)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방법)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기계,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부수장비의 유지, 개·보수,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설물 및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2018~79

제출일자 : 2018.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경제 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사 업 비 : 200백만원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19년	100	200				200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육성자금 신청 업무 지원

나. 부서의견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설립 전 19년간 융자액보다 보다 설립 후(2015) 3년간 융자금액이 1.5배가량 많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 경제 침체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요구함에 따라 전체 융자금액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출연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4. 참고사항

- 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 붙임 1

관 계 법 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연기관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 1644-2900	
			홈페이지 www.gnsinbo.or.kr	
주요연혁	○ 1996. 6월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경기재단에 이어 전국 2번째) ○ 2000. 3월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 변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시행) ○ 2004. 9월 진주지점 개점 ○ 2006. 1월 양산지점 개점 ○ 2008. 5월 마산지점 개점 ○ 2009. 7월 거제지점 개점 ○ 2010. 4월 김해지점 개점 ○ 2011. 4월 사천지점 개점 ○ 2011. 5월 중소기업 지원유공단체 국무총리 표창 수상 ○ 2011. 7월 통영지점 개점 ○ 2015. 4월 거창지점 개점 ○ 2016. 5월 창녕지점 개점 ○ 2017. 6월 고객지원센터 개소 (무방문 기한연장 및 콜센터 운용) ○ 2017. 12월 누적 신용보증 공급금액 6조원 ○ 2017. 12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17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우수기관) ○ 2018. 1월 기업지원부 신설 (교육·컨설팅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탁관리) ○ 2018. 4월 진해지점 개점 ○ 2018. 5월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금융취약계층 희생지원서비스)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8.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3명		88명	5명
임원 (‘18.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공석	-	-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년
		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
		김○○	경남은행 경영관리그룹장	"
		최○○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
		최○○	현대로템(주) 생산본부장	"
		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
감사	장○○	장직수회계사무소 대표	"	

주요기능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운용, 경영지도, 道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탁관리, 금융복지상담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98,914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4,459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230,747 (자산 총액)
	예산액 ²⁾	8,768	9,500	10,540		부채	31,883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자본 ¹⁾ 」	198,914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6,969				24,119		-7,150

[붙임 1]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2018. 9. 14.(금) 13:30

도정회의실(본관 2층)

시군 부단체장 지역경제협력회의



경 상 남 도
(경제정책과)

● ● 목 차 ● ●

1. 도 정 4개 년 계 획 (산 업 경 제 분 야)	1
2. 도 - 시 군 협 조 · 건 의 사 항	13
(도 협 조 사 항)	
1.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종합계획	14
2. 산업단지 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21
3. 2018년 일자리사업 집행현황	24
4. 2019년 일자리사업 발굴	27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31
6. 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지원센터 적극 유치	33
7. 소상공인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37
8.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협조	39
9. 전문직종 일본취업 참여자 모집 안내	40
(시 군 협 조 · 건 의 사 항)	
경 제 분 야 협 조 · 건 의 사 항 (18개 시 군 28건)	44~91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 ❖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를 해소하고 각종 특례보증 집중 지원 등 금융 소외계층 지원 확대 필요

□ 지원근거 및 필요성

○ 지원근거

- 「지역신용재단법」 제33조(결손보전)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필요성

- 조선업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자금지원
- 경제침체 장기화와 각종 특례보증 집중 지원에 따른 손실 누적으로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감소 예상
- 운용배수*의 급격한 증가로 수요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보증 장애 예상

* 운용배수 : 보증잔액/기본재산, 경남 6.17배(전국평균 5.38배)

□ 자금출연 및 연도별 대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추정)	'19년말 (추정)
보증공급	5,898	7,082	8,491	9,388	10,000	11,000
대위변제	188.3	142.1	168.5	209.7	300	355
대손발생액	△29.6	△9.1	△26.4	△71.5	△120	△200
출연금 (도/시군)	98.2 (41.7/5)	132.2 (40.4/13)	131.2 (37.6/14)	94.6 (10/18.5)	126 (10/22)	158 (30/미정)

※ 보증공급 : 당해연도 지원금액, 대위변제 :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금액 차감

□ 경남도 지원계획

- '19년도 출연금 30억원('18년 대비 20억 증액) 편성 요구

□ 시군 협조사항

- 신용보증재단 시군별 출연금 증액(붙임) 협조

시군별 출연 요청 금액 산정 현황

(기간: 1996.6~2018.6, 단위: 억원)

구 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총대위변제발생		평 균 점유율	2019년 출연요청 금 액*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계	65,513	100%	12,758	100%	2,425	100%	100.0%	42
창원시	26,573	40.6%	4,375	34.3%	891	36.7%	37.2%	8
김해시	10,539	16.1%	2,123	16.6%	485	20.0%	17.6%	5
진주시	8,119	12.4%	1,569	12.3%	230	9.5%	11.4%	4
양산시	5,525	8.4%	1,035	8.1%	197	8.1%	8.2%	3
거제시	3,939	6.0%	1,055	8.3%	124	5.1%	6.5%	3
통영시	2,358	3.6%	639	5.0%	99	4.1%	4.2%	3
사천시	1,606	2.5%	394	3.1%	73	3.0%	2.8%	2
밀양시	1,076	1.6%	206	1.6%	46	1.9%	1.7%	2
함안군	1,356	2.1%	280	2.2%	80	3.3%	2.5%	2
거창군	933	1.4%	253	2.0%	26	1.1%	1.5%	2
창녕군	595	0.9%	144	1.1%	29	1.2%	1.1%	1
고성군	545	0.8%	146	1.1%	33	1.4%	1.1%	1
남해군	488	0.7%	112	0.9%	14	0.6%	0.7%	1
산청군	372	0.6%	100	0.8%	15	0.6%	0.7%	1
함양군	347	0.5%	101	0.8%	11	0.5%	0.6%	1
하동군	380	0.6%	76	0.6%	18	0.7%	0.6%	1
합천군	300	0.5%	76	0.6%	12	0.5%	0.5%	1
의령군	268	0.4%	56	0.4%	19	0.8%	0.5%	1
기타	194	0.3%	18	0.1%	23	0.9%	0.5%	

* 평균점유율 구간에 따른 출연필요 금액 산출

- 0% ~ 1.5%미만 : 1억원 , 1.5% ~ 3%미만 : 2억원, 3% ~ 10% 미만 : 3억원,
- 10%이상 ~ 15%미만 : 4억원 , 15%이상 ~ 20%미만 : 5억원,
- 20%이상 ~ 30%미만 : 6억원 , 30%이상 ~ 35%미만 : 7억원, 35%이상 : 8억원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요청**

1.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귀 시군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 보증**을 위한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및 조례에 따라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 중입니다.

3.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와 각종 특례보증 집중 지원에 따른 손실 증가*로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손실금 추세 : ('16) △26.5억원 → ('17)△209.7억원 → ('18년추정) △300억원

4. 이에, 우리 도에서도 '19년 재단 출연금(매년 10억원) 확대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나 조선업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서는 **시군의 출연이 필수적**입니다.

5. 다시 한 번 귀 시군의 **적극적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요청**드리며 2019년 예산 반영 시 참고자료를 붙임 송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군별 출연 필요 금액 산정(참고용)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경제기업사랑과장), 진주시장(일자리창출과장), 통영시장(지역경제과장), 사천시장(지역경제과장), 김해시장(일자리정책과장), 밀양시장(기업경제과장), 거제시장(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양산시장(일자리경제과장), 의령군수(경제교통과장), 함안군수(경제교통과장), 창녕군수(경제도시과장), 고성군수(경제교통과장), 남해군수(경제과장), 하동군수(경제전략과장), 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 함양군수(일자리경제과장),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합천군수(경제교통과장)

주무관

소상공인지원
담당

경제정책과장

2018. 8. 22.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0282

(2018. 8. 22.)

접수 경제교통과-84156

(2018. 8. 22.)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300(사림동), (사림동, 경
상남도청)

/ <http://www.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433

팩스번호 055-211-2819

/ pandora13@korea.kr

/ 대국민 공개

시·군별 출연 필요 금액 산정

(기간: 1996.6~2018.6, 단위: 억원)

구 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총대위변제발생		평 균 점유율	2019년 출연요청 금 액*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합 계	65,513	100%	12,758	100%	2,425	100%	100.0%	42
창원시	26,573	40.6%	4,375	34.3%	891	36.7%	37.2%	8
김해시	10,539	16.1%	2,123	16.6%	485	20.0%	17.6%	5
진주시	8,119	12.4%	1,569	12.3%	230	9.5%	11.4%	4
양산시	5,525	8.4%	1,035	8.1%	197	8.1%	8.2%	3
거제시	3,939	6.0%	1,055	8.3%	124	5.1%	6.5%	3
통영시	2,358	3.6%	639	5.0%	99	4.1%	4.2%	3
사천시	1,606	2.5%	394	3.1%	73	3.0%	2.8%	2
밀양시	1,076	1.6%	206	1.6%	46	1.9%	1.7%	2
함안군	1,356	2.1%	280	2.2%	80	3.3%	2.5%	2
거창군	933	1.4%	253	2.0%	26	1.1%	1.5%	2
창녕군	595	0.9%	144	1.1%	29	1.2%	1.1%	1
고성군	545	0.8%	146	1.1%	33	1.4%	1.1%	1
남해군	488	0.7%	112	0.9%	14	0.6%	0.7%	1
산청군	372	0.6%	100	0.8%	15	0.6%	0.7%	1
함양군	347	0.5%	101	0.8%	11	0.5%	0.6%	1
하동군	380	0.6%	76	0.6%	18	0.7%	0.6%	1
합천군	300	0.5%	76	0.6%	12	0.5%	0.5%	1
의령군	268	0.4%	56	0.4%	19	0.8%	0.5%	1
기타	194	0.3%	18	0.1%	23	0.9%	0.5%	

* 평균점유율 구간에 따른 출연필요 금액 산출

— 0% ~ 1.5%미만 : 1억원 , 1.5% ~ 3%미만 : 2억원, 3% ~ 10% 미만 : 3억원, 10%이상 ~ 15% 미만 : 4억원 , 15%이상 ~ 20%미만 : 5억원, 20%이상 ~ 30%미만 : 6억원 , 30%이상 ~ 35%미만 : 7억원, 35%이상 : 8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경유)

제목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 군정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불임과 같이 거창군의 출연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임 :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

부장

이사장 직무 2018. 8. 16.
대행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 2018-1409 (2018. 8. 16.) 접수 경제교통과-81796 (2018. 8. 17.)

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 www.gnsinbo.or.kr

전화번호 055-715-5125 팩스번호 055-717-0034 / tamer81@gnsinbo.or.kr / 대국민 공개

2019년도
거창군 출연금 지원 요청



경남신용보증재단
Gyeong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 관련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 법§7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금융회사·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4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도·시·군·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
 - 조례§6 “도지사는 안정적 재단 운영을 위해 시·군 등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

□ 출연금 지원 요청

-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 요청

* 【별첨】 시·군별 출연 필요 금액 산정 참고

□ 거창군 신용보증 주요 현황

- 거창군 보증공급 현황 (기한연장 포함)
 - 거창군 소재 기업에 지원된 총보증 금액은 933억원으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 ~ 2014년	2,085	362	2	1	2,087	363
2015년	516	108	-	-	516	108
2016년	761	161	-	-	761	161
2017년	951	186	-	-	951	186
2018년 6월말	618	115	-	-	618	115
합 계	4,931	932	2	1	4,933	933

○ 거창군 대위변제 현황

- 거창군 소재 기업의 대위변제 금액은 26억원에 달함

(단위: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 ~ 2014년	165	14	1	1	166	15
2015년	21	1	-	-	21	1
2016년	34	4	-	-	34	4
2017년	34	3	-	-	34	3
2018년 6월말	20	3	-	-	20	3
합 계	274	25	1	1	275	26

□ 출연금 현황

○ 신용보증을 통하여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고 있는 시·군의 출연금 비중이 3.7%로 저조한 실정

(2018.6.30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출 연 금					이월 손익금	계
	정 부	경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등		
금 액	419.8	692.9	78.5	857.9	94.7	△55.5	2,088.3
비 율	19.6%	32.3%	3.7%	40.0%	4.4%	-	100%

※ 시군 출연 현황

창원(12), 거제(12), 김해·양산(각7), 진주(6.5), 통영·사천·함안(각4), 거창·고성·창녕(각3), 밀양·남해·함양·산청·합천·의령(각2), 하동(1)

□ 출연의 필요성

- 조선업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
※ 운용배수 = 보증잔액/기본재산, 경남신보 6.17배(전국 평균 5.38배)
-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각종 특례보증 집중 지원에 따른 손실 증가로 **기본재산 지속적인 감소** 예상
※ 손실금 증가 추세 : (2016년) △265억원 ⇨ (2017년) △715억원 ⇨ (2018년 추정) △120억원
- 재단의 주 수입원인 보증료 약 122억원(년)과 예치금 이자수익 약 37억원(년) 으로는 증가하는 대위변제금 충당이 어려운 실정
※ 대위변제금 증가 추세 : (2016년) 168.5억원 ⇨ (2017년) 209.7억원 ⇨ (2018년 추정) 300억원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귀군의 지원없이 전적으로 재단 자체 인력 및 시스템을 운용하여 추천에서 승인, 집행의 one-stop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거창군의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에 기여하고 있음
- 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재단의 보증공급으로 직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고 있는 시·군의 **적극적 출연이 필수적**임

【별첨】

시·군별 출연 필요 금액 산정

(기간: 1996.6~2018.6, 단위: 억원)

구 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총대위변제발생		평 균 점유율	2019년 출연요청 금 액*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합 계	65,513	100%	12,758	100%	2,425	100%	100.0%	42
창원시	26,573	40.6%	4,375	34.3%	891	36.7%	37.2%	8
김해시	10,539	16.1%	2,123	16.6%	485	20.0%	17.6%	5
진주시	8,119	12.4%	1,569	12.3%	230	9.5%	11.4%	4
양산시	5,525	8.4%	1,035	8.1%	197	8.1%	8.2%	3
거제시	3,939	6.0%	1,055	8.3%	124	5.1%	6.5%	3
통영시	2,358	3.6%	639	5.0%	99	4.1%	4.2%	3
사천시	1,606	2.5%	394	3.1%	73	3.0%	2.8%	2
밀양시	1,076	1.6%	206	1.6%	46	1.9%	1.7%	2
함안군	1,356	2.1%	280	2.2%	80	3.3%	2.5%	2
거창군	933	1.4%	253	2.0%	26	1.1%	1.5%	2
창녕군	595	0.9%	144	1.1%	29	1.2%	1.1%	1
고성군	545	0.8%	146	1.1%	33	1.4%	1.1%	1
남해군	488	0.7%	112	0.9%	14	0.6%	0.7%	1
산청군	372	0.6%	100	0.8%	15	0.6%	0.7%	1
함양군	347	0.5%	101	0.8%	11	0.5%	0.6%	1
하동군	380	0.6%	76	0.6%	18	0.7%	0.6%	1
합천군	300	0.5%	76	0.6%	12	0.5%	0.5%	1
의령군	268	0.4%	56	0.4%	19	0.8%	0.5%	1
기타	194	0.3%	18	0.1%	23	0.9%	0.5%	

* 평균점유율 구간에 따른 출연필요 금액 산출

－ 0% ~ 1.5%미만 : 1억원 , 1.5% ~ 3%미만 : 2억원, 3% ~ 10% 미만 : 3억원, 10%이상 ~ 15% 미만 : 4억원 , 15%이상 ~ 20%미만 : 5억원, 20%이상 ~ 30%미만 : 6억원 , 30%이상 ~ 35%미만 : 7억원, 35%이상 : 8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경유)

제목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관련 보충자료

1. 군정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군에 송부한 ‘출연금 지원 요청’ (2018.8.16일자) 문서 관련하여 출연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임 :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관련 보충자료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

부장

이사장 직무 2018. 9. 11.
대행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 2018-1557 (2018. 9. 11.) 접수 경제교통과-91440 (2018. 9. 11.)

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 www.gnsinbo.or.kr

전화번호 055-715-5125 팩스번호 055-717-0034 / tamer81@gnsinbo.or.kr / 대국민 공개

□ 거창지점 설립 전·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주요현황

1. 보증공급 현황 (기한연장 포함)

- 거창군 소재 기업에 보증 공급된 연평균 업체수와 금액은 거창지점 설립 이후 약 8배 증가하였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개, 억원)

구 분	보증공급				
	업체수	금액	점유율	연 평균 업체수	연 평균 금액
설립 전 (96.6월 ~ 2015.3월)	2,168	380	1.03%	116	20
설립 후 (2015.4월 ~ 2018.8월)	2,939	586	1.91%	882	176

2. 대위변제 현황

- 거창군 소재 대위변제 기업의 연평균 업체수와 금액은 거창지점 설립 이후 약 4배 증가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보증공급의 결과임

(단위: 개, 억원)

구 분	대위변제				
	업체수	금액	점유율	연 평균 업체수	연 평균 금액
설립 전 (96.6월 ~ 2015.3월)	169	14.4	0.95%	10	1
설립 후 (2015.4월 ~ 2018.8월)	118	12.4	1.26%	36	4

□ 출연의 필요성

1. 대위변제금 증가에 따른 지속적 손실발생

- 거창군민을 위한 적극적 보증공급의 결과 연평균 대위변제금액 4억원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져 재정수지 악화 요인이 됨

2. 거창지점 설립에 따른 운영비용 발생

- 거창군민의 편의성 도모와 거창지역의 서민금융 밀착지원을 위해 거창지점 개설에 따라 3명의 직원 근무, 사무실 운영경비 등 연간 약 4억원의 비용이 소요

3. 거창지점 개설에 따른 거리·비용 절감효과 및 보증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여

- 거창지점 개점에 따라 거창군민이 원거리 영업점(진주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는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이어짐

【거창지점과 진주지점의 관할구역 별 거리비교】

구 분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진주지점	40km	80km	60km	50km
거창지점	40km	-	30km	37km

*고객이 진주지점 대신 거창지점을 방문할 경우 시간·경제적 비용절감을 살펴보면

①시간절감 효과는 1,600시간 【800명(연간 고객) * 2시간(진주지점 방문 시 소요 시간)】

②비용절감 효과는 24백만원 【800명(연간고객) * 30,000원(진주지점 방문시 소요 비용)】 임

4.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행으로 거창군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100억원) 공급은 거창군의 지원없이 전적으로 재단 자체 인력 및 시스템을 운용하여 추천에서 승인, 집행의 one-stop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거창군의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에 기여하고 있음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8~80

제출일자 : 2018. 10.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 가치화와 시장 인지도 제고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백만원)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타
2019년	180	80	80	40	4	36	

○ 사업내용

- 산림 석골재자원 품질 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 표면가공 복합기법
 - ↳ 보급형 컬링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나. 부서의견

- 우리군 실물경제의 중추인 석재산업계의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석재자원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 국내 석재산업을 선도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 신기술 지원사업이 필요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1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8~81
----------	---------

제출일자 : 2018. 10.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요 구액	재 원 별(백만원)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타
2019년	180	180	180	-	-	180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등

나. 부서의견

-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1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관 계 법 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55-943-3921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8.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0명			5명	
임원 (‘18.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윤○○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조○○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임○○	거창석산협회장			"	
		임○○	거창군청(기업지원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6. 3. 21 ~ ‘19. 3. 20	
	감사	전○○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변○○	변법식변호사사무소 대표			‘16. 3. 21 ~ ‘19. 3. 20	
	고문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7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183 (자산 총액)
	예산액 ²⁾	507	488	487		부채	5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00	200	180		자본 ¹⁾	17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43			396			147